

2020 - 506

[] ()

- 88 - 222 88 - 513 -

1. 제2002-263호(2002.7.2.)로 미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374호(2003.11.18.)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558호(2005.4.21)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되었으며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160호(2015.6.11)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116호(2016.4.1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7호(2018.1.1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101호(2019.3.1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257호(2019.8.1.)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,
2. 「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2조에 따라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[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]을 변경 결정하고,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 하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0년 12월 3일
서울특별시장

I.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

①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

1.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·유형·위치·면적 및 지정목적(변경 없음)

			(㎡)	
		88 70	478,515㎡	.

2.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(변경 없음)

3.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(변경 없음)

4.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(변경 없음)

1) 촉진구역(변경 없음)

			(㎡)				
			28,215.0	-	28,215.0		
		1	8,390.0	-	8,390.0		
		1	55,112.0	-	55,112.0		
		2	17,686.0	-	17,686.0		
		2	18,958.0	-	18,958.0		
		5	12,870.0	-	12,870.0		
		6	2,574.1	-	2,574.1		
		7	11,526.0	-	11,526.0		
		3	23,995.0	-	23,995.0		8
			299,188.9	-	299,188.9		

2) 촉진계획(변경 없음)

(1) 토지이용계획(변경 없음)

(2) 건폐율·용적률·건축물의 높이 및 주용도에 관한 계획(변경 없음)

(3) 정비기반시설 계획(변경 없음)

(4) 교통처리계획(변경 없음)

(5) 기타사항(변경 없음)

5. 존치관리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

1)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

(1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(변경 없음)

			(㎡)			
		88 1083	315,000.0	-	315,000.0	2002-263 (2002.07.02.)

2)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

(1) 용도지역 조서(변경 없음)

		(㎡)			(%)	
		315,000	-	315,000	100.0	

		(㎡)			(%)	
	88	155,190	-	155,190	49.3	
	1064-6	55,250	-	55,250	17.5	
	517-6	81,560	-	81,560	25.9	
3	1083	23,000	-	23,000	7.3	

(2) 용도지구 조서(변경 없음)

(3) 도시기반시설 조서(변경 없음)

3)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

(1) 획지계획(변경)

■ 1블럭

		가	(㎡)	(㎡)		
	-	1	91,149	1-2	2,781.0	
				1-15	1,446.0	
	-	1	91,112	1-2-1	1,145.0	.
				1-2-2	1,620.0	
				1-15	1,393.0	. ()

1-2, 1-15 가 1 [] 37.0㎡
(1-2, 1-15) ()

(2)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, 용적률, 높이계획

① 건축물 용도계획

■ 불허용도 계획

		· 2 · () · ()	· · () · ()
3		· 2 · () ·	· () · () ·

		. 2 . () . ()	
		. 2 . 2 . . () . .	. 88-222, 88-965 88-513, 88-514, 88-515, 88-516, 88-517, 88-518, 88-519, 88-520, 88-998
	3	. 2 . .	. () . ()

1. , 9
 2.
 3. 33 1

■ 변경사유서

	. .	. 88-222, 88-965 88-513, 88-514, 88-515, 88-516, 88-517, 88-518, 88-519, 88-520, 88-998 31 가

- 학교위생정화 구역내 불허용도(변경 없음)
 ■ 권장용도 계획(변경 없음)
 ■ 지정용도 계획(신설)

	. ())	. 88-222, 88-965 88-513, 88-514, 88-515, 88-516, 88-517, 88-518, 88-519, 88-520, 88-998

) 「 2 2 ,

■ 결정사유서

-	.	88-222 1 88-513 8

② 건축물 건폐율 계획(변경 없음)

- 계획방향(변경 없음)
- 계획기준(변경 없음)

	60%	가
	60%	
3	50%	

- 계획내용(변경 없음)

③ 건축물 용적률 계획(변경)

- 용적률 계획(변경)

	→	350%	500%	3	-
	→	300%	400%		-
	→	300%	360%		2003 6 30 400%
	→ 3	200%	250%		-
		350%	500%		-
	→	350%	500%	3	-
	→	300%	400%		-
	→	300%	360%		2003 6 30 400%
	→ 3	200%	250%		-
		350%	500%		-

			1,120%	• 88-222, 88-965
		: 1,000%	1,200%	• 88-513, 88-514, 88-515, 88-516, 88-517, 88-518, 88-519, 88-520, 88-998

■ 변경사유서

• - : 350%/500% (/ :) - : () (88-222 1 : / : 1,000%/1,120%) (88-513 8 : / : 1,000%/1,200%)		• J J J J

■ 용적률 적용기준(신설)

		• : 14% () • 가 : () 50%	
		• 80% 90%	• 88-222, 88-965
		• 10% 20% (가)	• 88-513, 88-514, 88-515, 88-516, 88-517, 88-518, 88-519, 88-520, 88-998
	21	• , , 2가 ,	
		• 300 - 200m ²	
		• : 45m ² • : 60m ²	

「 」

■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(변경 없음)

④ 건축물 높이계획(변경)

■ 높이 적용기준(변경 없음)

■ 최고높이(변경)

	(,)	80m	

		60m	
	(4)	25m	
		80m	
	(,)	90m	• ' 88-222, 88-965 '
		60m	
		80m	• ' 88-513, 88-514, 88-515, 88-516, 88-517, 88-518, 88-519, 88-520, 88-998 '
	(4)	25m	

■ 변경사유서

	• - (,) (88-222 1) (: 80m / : 90m) - (88-513 8) (: 60m / : 80m)	• 88-222, 88-965 88-513, 88-514, 88-515, 88-516, 88-517, 88-518, 88-519, 88-520, 88-998

(3) 건축물의 형태와 배치계획(변경 없음)

① 계획기준(변경 없음)

	•가 •	•12m •	3m, 1m

② 조성지침(변경 없음)

	• () (가) 가
	• ,

	가
	가

- 건축선 후퇴부분의 처리(변경 없음)
-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형태 및 외관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계획
－ 지정

가				
1	1-66			
			60%	54
			350% 500%	
			3m	

()

－ 변경

가				
1	1, 2-2, 3-14, 16-66			
			60%	54
			350% 500%	
			3m	

가				
	2-1		• •	
			• 60%	54
			• : 1,000% • : 1,120%	
			•	
			•	
			•	
			•	
	15		• •	
			• 60%	54
			• : 1,000% • : 1,200%	
			•	
			•	
			•	
			• 3m	

■ 공공기여계획(신설)

()	1,000%	1,120%	• : 14%)(160.30㎡) • 가 : • : 50% ()	• 88-222, 88-965
	1,000%	1,200%	• : 14%)(195.02㎡) • 가 : • : 50% ()	• 88-513, 88-514, 88-515, 88-516, 88-517, 88-518, 88-519, 88-520, 88-998

) 「

가 「 3-2-1, 3-2-2
50 3 1

가

4)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

(1)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(변경 없음)

① 대지내 공지계획(변경 없음)

■ 계획방향(변경 없음)

. . . .	가
------------------	---

■ 계획기준(변경 없음)

	·가 가	· () 1.5m (3m)
	. 15m . 가 가 가 . () . 5%	
	·	

■ 공개공지 조성방식(변경 없음)

② 교통처리계획(변경 없음)

(2) 경관형성계획(변경 없음)

II. 관계 도면 : 붙임 참고(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)

※ 첨부된 결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III.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(☎02-2133-7227) 및 성북구 주거정비과(☎02-2241-2855)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.

- 하월곡동 88-513일원 역세권 청년주택
 ■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(기정)



-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(변경)

